



시 보



제1749호 2026. 7. 13. (월)

공 고

- 「2025.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」위원 공개모집 공고 2
- 「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9
- 2026년 외달도 해수욕장 및 해수풀장 표준가격제 시행 공고 17
- 「목포시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19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2026년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

「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「2026.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」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바랍니다.

2026년 7월 13일

목 포 시 장

1. 모집인원 : 10명 이내

- 시민단체 2명, 교육·문화계 2명, 경제계 2명, 체육계 2명, 여성계 2명

2. 참여자격

- 학교, 연구소, 학회, 협회, 관련기관,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자, 개인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활동 경력이 있는 자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
※ 제외대상 : 「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」 제4조제7항 심사위원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심사위원 중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, 분야별 전문인사, 공개모집인사는 제외됩니다.

3. 선정방법 : 서류심사 선정

4. 선정기준

-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
- 분야별 선정 인원보다 초과 인원이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
 - ① 해당분야 활동경력이 많은 자(최근 5년간)
 - ② 선정기준에 적합한 연장자
 - ③ 목포시 장기거주자
 - ④ 기타 지역사회 기여도 등

5. 지원서 접수

가. 공고기간 : 2026. 7. 13.(월) ~ 8. 31.(월)

나. 접수기간 : 2026. 7. 13.(월) ~ 8. 31.(월) 18:00까지

다. 접 수 처 : 목포시 자치행정과 (☎270-3236)

(우)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자치행정과

6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
7. 제출서류(첨부물 참조)

-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1부(서식 1)
- 자기소개서 1부(서식 2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서식 3) 및 재직증명서(필요시) 1부
- 주민등록초본 1부(거주사실확인용)
- ※ 기타 증빙자료(표창, 논문 등) 사본 1부

8. 대상자 선정통지 :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통지

9. 기 타

- 모든 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위촉된 위원은 다음연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촉됨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자치행정과(☎270-32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서식 1】

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

접수 번호	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				지 원 분 야		사 진 소명함판 (3cmX4cm)
성 명	(한글)		성별	남	생년월일		
	(한자)			여			
현 주 소	(전화 :)						
	연 락 처				E-mail		
근 무 처							
최종학력	학 교		학 과		전 공		
주요경력	○ ○ ○ ○						
자격사항	○ ○ ○ ○						
첨부서류 : 1. 자기소개서 1부 2. 자격증명서, 재직증명서(필요시) 1부							
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. . . 성 명 (인) 목 포 시 장 귀하							

【서식 2】

자 기 소 개 서

[illegible]

10. 저서 및 논문	제출일	출판사· 관련학회	논 문 명	주 요 내 용	참여자수
11. 기타 사항					

【서식 3】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[안]

목포시(자치행정과)에서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,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

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,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
- 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2026.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 선정
-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생년월일, 성명, 주소, 직업, 학력 등 주요경력, 연락처(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), 이메일, 자격증
-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2026.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 선정 시까지
- ④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, 이용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단, 동의하지 않는 경우 2026.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 응모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개인정보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

동의함 ☐

동의안함 ☐

II.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

-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시민의 상 선정 관련부서
-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: 시민의 상 심사위원 선정
-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생년월일, 성명, 본적, 주소, 직업, 학력 등 주요경력, 범죄사실확인서
-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: 시민의 상 심사위원 선정시까지
- ⑤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단, 동의하지 않는 경우 2026. 목포시 시민의 상 응모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

동의함 ☐

동의안함 ☐

III.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

※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
○ 고유식별정보(해당 고유식별정보 명시)수집·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※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없습니다

동의함 ☐

동의안함 ☐

IV. 민감정보처리에 관한 동의

※ 민감정보 : 사상, 신념, 노동조합, 정당가입, 건강, 유전정보, 범죄경력 등의 개인정보

○ 민감정보(해당 민감 정보 명시)수집·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☐

동의안함 ☐

V. 홍보·마케팅에 관한 동의

○ 2026. 시민의상 심사위원회 일정 안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동의 거부 시 2026. 시민의상 심사위원 응모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동의함	SMS(문자)	전화	이메일	주소(우편)	동의하지 않음	
	☐	☐	☐	☐		☐

▶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※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

월

일

성명

(서명)

〈 작 성 방 법 〉

I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

-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·이용목적, 항목, 이용기간,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 4가지 내용을 서식에 명확히 기술
- 서식에 기술한 수집항목이 실제 수집하는 항목과 일치하도록 작성
- 보유 및 이용기간은 최소화 하며, 법정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를 반영
- 미동의 권리 및 불이익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따른 동의(예시)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회원가입 및 관리
 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 - 필수정보 : 성명, 연락처(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)
 - 선택정보 : 생년월일, 주소, 이메일
 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 회원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
 4.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단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○○○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☐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II.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(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)

- 제3자 제공에 따른 5가지 고지사항을 명확히 기술

3자 제공에 따른 고지 및 동의(예시)

1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: ○○기관
 2. 개인정보 제공 목적 : 신규서비스 개발, 상품 배송, 고객별 통계 분석
 3.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
 4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 ○년
 5.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단, 제3자에게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○○○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☐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III.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

(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가 있는 경우)

-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의 동의란을 마련
-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 할 경우 수집하는 정보를 명확히 기술
예) 고유식별정보(운전면허번호)처리에 동의하십니까?

IV. 홍보·마케팅에 관한 동의

- 홍보/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알린 후 별도의 동의

V. 14세 미만의 아동 법정 대리인 동의

-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

조례안 입법예고문

「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, 「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9일

목 포 시 장

1. **조례명** :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**개정이유** :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및 특정 성별 위원 수의 제한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,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
3. **주요내용**
 -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항 신설(안 제3조제4항)
 -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 제고(안 제5조)
 -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)
4. **조례개정안** : 붙임(신·구조문대비표 포함)
5. **관계법령**
 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(조례)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

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(감사실) : 의견없음
- 성별영향평가(여성가족과) : 의견없음

7.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: 해당없음

8. 예산상황 :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

9. 의견제출

-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30일까지 목포시장(여성가족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 등
-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68), 직접 방문 등

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8조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5조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”를 “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5조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호선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촉직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관한사항을 담당하며 제6조”를 “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제7조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하되”를 “하되, 2회에 한하여”로, “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
2.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
3.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·연구·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
4.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출석위원”을 “부의된 안건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”으로 한다.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”를 “서기를 둔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간사는 서남권청소년축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5조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남권청소년축제(이하 “축제”라 한다)를 청소년의 육성·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남권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5조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,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>	제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호선한다. ④ 위촉직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·②	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·②

(생략)

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실무전반에 관한사항을 담당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남권 청소년 축제 기획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한다.

제5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.

<단서 신설>

제6조(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제7조-----

-----.

제5조(임기) -----

----- 하되, 2회에 한하여 -----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해촉) -----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-----
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

2.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

제8조(회의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<신설>

자문·연구·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

4.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부의된
안건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-
-----.

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 -----
----- 서기를
둔다.

② 간사는 서남권청소년축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조 례 명 :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2026년 외달도 해수욕장 및 해수풀장 표준가격제 시행 공고

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「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」제5조에 의거 외달도 해수욕장 및 해수풀장 표준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시 합니다.

2026. 7. 9.

목 포 시 장

☐ 외달도 해수욕장

- 개장 기간 : 2026. 7. 11. ~ 8. 23. (44일간)
- 개장 시간 : 09:00 ~ 18:00
- 입 장 료 : 무료 입장
- 편의시설 [무상 사용]
 - 그늘막 4개소, 파고라 1개소, 화장실 1동, 개수대 1개소 등
- 구명조끼 무료 대여 가능
 - 대여 가능 수량 : 30개

☐ 외달도 해수풀장

- 개장 기간 : 2026. 7. 11. ~ 8. 23. (44일간)
- 개장 시간 : 09:00 ~ 18:00
 - 특별) 매주 금,토 어린이풀장 DJ·버블 이벤트 : 19:00 ~ 21:00 [무료입장]

○ 입 장 료

- 일 반 : 대인 3,000원 / 소인 2,000원

- 할 인 : 대인 2,000원 / 소인 1,000원

※ 단체(20명 이상), 장애인, 경로우대자, 국가유공자

「목포시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목포시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13.

목 포 시 장

1. 개정 이유

- 2009년 이후 분뇨·수집 운반 수수료가 15원/ℓ으로 동결되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화 필요
- 분뇨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여, 안정적인 분뇨 수집·운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불편 해소

2. 주요 내용

-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(별표)

3. 개정조례(안) : 붙임 1

4. 관계법령

- 「하수도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제45조
- 「목포시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5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: 이상없음
- 규제심사(심의) 대상 여부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이상없음
-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6. 입법예고 : 2026. 7. 13. ~ 2026. 8. 3. (21일간)

7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없음

8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. 8. 3.까지 목포시장(기후환경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

나. 제출방법 : 우편, FAX, 이메일 직접 방문

다.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목포시청 기후환경과(환경위생팀)

- 주소 : (우 58724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수문로 32, 4층 기후환경과
- 전화 : 061-270-3334, 팩스 : 061-270-3585
- 이메일 : aram0803@korea.kr

9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후환경과(☎061-270-33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목포시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(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산정기준)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

[별표]

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산정기준
(안 제4조 및 제5조)

부과대상	부과기준	수집·운반 수수료	시행시기
· 수거식 화장실 · 개인하수처리시설	L(리터)당	22원	2026. 12. 1.~
		24원	2028. 1. 1.~

※ “수집·운반”은 분뇨의 수집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를 포함한다)
· 운반을 말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「목포시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